

고용형태 현황

사업체 (법인)	사업체명(법인명)	법인등록번호			
	소재지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대표자	담당자 성명			

공시내용	구분		합계	남성 근로자 수	여성 근로자 수
	① 소속 근로자	합계	명	명	명
		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(④ + ⑥)	명	명	명
		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	명	명	명
		④ 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	⑤ 기간제근로자 수	명	명	명
		⑥ 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⑦ 특기사항				
	소속 외 근로자	⑧ 소속 외 근로자 수	명	명	명
		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			

작성방법

- ① 소속 근로자: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말합니다.
- ② 단시간근로자 수: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단시간근로자(이하 “단시간근로자”라 합니다)로서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단시간근로자 수를 말합니다. ④ 단시간근로자 수(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)와 ⑥ 단시간근로자 수[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(이하 “기간제근로자”라 합니다)인 단시간근로자 수]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. 단시간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⑤ 기간제근로자 수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. 단시간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⑦ 특기사항: 출산·육아로 휴직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·고용촉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.
- ⑧ 소속 외 근로자 수: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.
-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(중분류)를 참고하여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.
- ⑩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.